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부족한 인력 총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법인 인쇄사 신청 가능

경기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경영상 압박이 가중되는 곳이 하나둘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되지만, 약간의 자금지원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듯 일감과 자금에 대한 고민은 2013년을 살아가는 인쇄인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이에 버금가는 것이 인력문제다.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함께 일하던 직원을 떠나보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떠난 직원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아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산학협력사업 참여기업 우대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2013년 현재 현역 4000명, 보충역 3300명이다. 현역은 전년과 같지만 보충역은 300명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인원배정 비중이 강화(2013년 45.7% → 2014년 80%)될 예정이며, 산학협력에 참여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취업예정자(고3)들이 졸업한 다음년도에 배정되는 것을 올해부

터는 졸업한 년도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의 신청이 보다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잡한 분야별 추천기준표(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를 일원화하고 제출 서류를 66개에서 38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산학협력사업 참여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맞춤반(구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중에서 특성화고 협약 학생을 고용한 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그리고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을 맺은 기업이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형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쇄업체의 90% 이상이 10인 이하 기업인데, 업종의 특수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지정업체의 경우는 선정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해당년도에 필요한 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업종 특수성 감안 기준 완화 필요”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또는 수출비중이 높거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 고용창출기업, 창업기업,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 정부시책 참여기업, 정부 표창을 받은 기업 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산업기능요원은 보통 6월 경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 접수를

중소기업기본법 상 법인 중소기업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인 업체만 해당되며, 공업 분야에서는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광업 분야에서는 10인 이상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채굴업체,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발전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해당된다. 정보처리관련산업 분야의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해당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나 신청되지 않은 기업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인쇄사는 공업 분야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이사·일용근로자 제외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를 제외한 인원으로서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로 포함한다. 신규업체의 경우는 신청할 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세부신청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당해년도 발행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전체와 신청기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직전 결산년도 재무제표(대

받아, 7월경 병무청으로 추천을 올리며, 10월경 병무청 심사를 통해 최종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정확한 내용은 매년 6월경 병무청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지침 공고로 안내되며, 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도에 관심이 많은 한 인쇄인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 기준이 10인 이상의 법인으로 되어 있어 인쇄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벽으로 다가온다”며 “인쇄업체의 90% 이상이 10인 이하 기업인데, 업종의 특수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병역지정업체 신청 주요 서류

1.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별도 양식)
2.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회서(별도 양식)
3.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특성화고생 채용 시)
4.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5. 공장등록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9.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비치서류 사본
10.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1.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공업 또는 에너지업일 경우)
12. 광업인부 등본 원본(광업일 경우)
13. 주력업종 확인서(정보처리업의 경우)